

2021년도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기술지원 청구비 산출내역서

구분	대상시설	1건 * 당 기술지원 청구비 단가	비고	
도 면 검 토 비	음성 유도기	교통약자법 시행령 별표1,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- 여객시설, 도로 등	200,000원	면세 법인으로 부가세 없음.
		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1,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- 공원,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, 공동주택 등	50,000원	
	점자 블록	교통약자법 시행령 별표1,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- 여객시설, 도로 등	250,000원	
		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1,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- 공원,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, 공동주택 등	200,000원	
	점자 표지판	교통약자법 시행령 별표1,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- 여객시설, 도로 등	200,000원	
		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1,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- 공원,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, 공동주택 등	100,000원	
	점자 안내판	교통약자법 시행령 별표1,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- 여객시설, 도로 등	70,000원	
		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1,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- 공원,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, 공동주택 등	70,000원	
현 장 점 검 비 **	음성 유도기	교통약자법 시행령 별표1,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- 여객시설, 도로 등	200,000원	
		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1,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- 공원,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, 공동주택 등	50,000원	
	점자 블록	교통약자법 시행령 별표1,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- 여객시설, 도로 등	250,000원	
		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1,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- 공원,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, 공동주택 등	200,000원	
	점자 표지판	교통약자법 시행령 별표1,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- 여객시설, 도로 등	200,000원	
		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1,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- 공원,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, 공동주택 등	100,000원	
	점자 안내판	교통약자법 시행령 별표1,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- 여객시설, 도로 등	70,000원	
		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1,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- 공원,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, 공동주택 등	70,000원	

* 1건의 단위는 대상시설별로 다음과 같음.

- 여객시설: 1개의 역사·정거장·터미널·공항시설·항만시설 등
- 공공건물, 공동주택: 1개의 건물(동)
- 도로: 1km
- 광장: 10,000m²

** 서울, 수도권역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 별도의 추가 출장비(교통비 및 식비 등 실비)가 발생함.

*** 상기의 조건으로 산출할 수 없는 경우 요청기관 및 업체와 협의 후 산출하도록 함.